



GLOBAL METHODIST CHURCH

총회 지역 사회:

조직 및

함께하는 삶을 위한 언약

(시행일: 2026년 9월 6일)

머리말

히브리서 12장 15절 등의 성경 말씀에 따라 존 웨슬리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격려했으며, 1744년 처음으로 동생 찰스 및 몇몇 다른 성직자들과 만나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리와 장정 (장정) ¶701). 그 전통의 영적 계승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교회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모두의 공동선을 위하여 평화롭게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또한 회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사도행전 15:28),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로마서 12:2). 따라서 총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돌보면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합니다.

조직 계획

I. 개회식

글로벌 감리교회는 총회 위원회가 추천하고 연대 협의회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총회를 개최하며,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총회는 위원회가 지정한 감독에 의해 개회가 선포되며, 다음과 같은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대표단 및 대의원 소개. 공식 출석 부름은 등록 절차를 통해 완료됩니다.
- 총회의 투표 정족수 확정
- 총회 위원회 보고.
- 총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우리 공동체 생활을 위한 **조직 계획 및 언약** 채택. **계획 및 언약**은 채택 되기 전, 회의장에서 과반수 찬성 투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총회 총무가 연대 협의회에 의해 임시로 임명된 경우(¶704.2, **계획 IV**), 연대 협의회 추천으로 총회 총무를 선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총회 폐회와 함께 직무를 시작하게 될 비서의 선거는 총회의 어느 회기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채택.
- 기타 업무

II. 사회자

총회의 모든 본회의는 의제위원회(¶704.1)가 지정한 대로 글로벌 감리교회의 현직 및 명예 감독들이

인도합니다. 입법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서기를 선출하기 위해 감독 중 한 명이 소집하며, 선출된 이들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아래 참조).

III. 총회 위원단 (P 812)

총회위원회는 총회 준비 전반을 관할하며, 총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총회에 추천합니다. 위원단은 또한 연대 협의회에 총 대의원 수를 추천하고, 전 세계 교회 전체에 대한 대의원의 공평한 배분 공식을 추천하며 (PP 208, 703.11, 709.6) 회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물류 준비를 조율할 것입니다. 연대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사이 기간에 본 조직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총회 개최 회기에 비준되어야 합니다.

IV. 총회 총무

총회는 연대 협의회에 의해 추천으로 총회 총무를 선출합니다. 새 총무의 임기는 총회 폐회 후 시작되며, 이전 총무가 전환 기간 동안 총회 폐회 후 행사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총무는 총회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주재 감독 및 연대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총무는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매일 의사일정을 실행하고 청원과 결의안을 다루는 입법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무는 총회 위원회와 협력하여, 총회 운영과 심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대의원이 총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또한, 총무는 총회 행정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아래와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직책은 유급 직원일 수 있습니다. 총회 회기 사이에 총무직이 공석이 될 경우, 연대 협의회는 다음 총회까지 직무를 수행할 후임자를 선출하며, 다음 총회의 개최 세션에서 총무를 선출하게 됩니다.

V. 일정 계획

총회에서 입법위원회 회의를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채택한 결정으로 인해, 코스타리카에서 계획되었던 일정과는 전혀 다른 시간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정표는 입법 위원회가 총회 개최 장소에서 대면으로 사역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텔리게이트는 2029년 12월 31일 기준 교회 수와 FTE 목회자 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연회에 대한 텔리게이트 배정은 2030년 3월 31일까지 연대 협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텔리게이트는 2031년 7월 1일까지 선출되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연회는 자신들에게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텔리게이트 수에 근거하여, 2030년 3월 31일 이전에 텔리게이트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2031년 7월 1일부터 접수됩니다. 청원 제출 마감은 2031년 10월 31일입니다. 청원 신고서는 2032년 4월 1일까지 발행될 것입니다. 이 계획 전반에 걸친 일정은 2032년 9월 1일 총회 소집 예정일을 대략적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실제 날짜가 그 날짜와 3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 계획 전반에 걸친 일정은 그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에 명시된 기한은 목표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변경되는 상황과 물류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VI. 대의원 자격 요건

- A. 총회 목회자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연회의 정회원이며 양호한 상태의 회원이어야 합니다(Par. 709.6). 여기에는 현직 장로목사 및 집사목사, 안수 승인을 받고 파송 중인 과도기적 본처 목사, 선임지위로 최소 4분의 1 시간 이상 파송되었거나 선임지위의 첫 7년 이내에 있는 선임 목회자, 최대 6개월까지 자원 휴직 중인 목회자, 및 안식년·출산·부친 휴가 중인 목회자가 포함됩니다. 비활동 목회자, 본처 전도사, 및 정직 중인 목회자는 봉사 자격이 없습니다.
- B. 평신도 대표는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단의 고백 교인으로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Par. 709.6).
- C.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이미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총회의 업무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가상 회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추가로 권장합니다. 대의원이 이러한 접근 수단이 없을 경우, 연회는 그러한 접근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D. 아래의 목표 마감일은 이후 대표단에 변경이 없는 한 모든 대의원과 대체자에게 적용됩니다:

2031년 7월 1일 - 모든 텔리게이트 및 대체가 선출되고 인증됨

2031년 12월 1일 - 모든 텔리게이트 및 대체가 등록을 완료하여 100 단어 약력과 사진을 제출하였고, 입법 위원회 선호도를 제출함

2032년 3월 1일 - 모든 텔리게이트 및 대체가 여행 준비를 완료하고 티켓을 구매함

2032년 5월 1일 - 비자 기한이 더 늦은 신청을 위임 사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텔리게이트가 필요에 따라 비자를 신청함

VII. 신흥 지역 대표자

연회 위원회는 조직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 연회로 소집될 준비가 되지 않은 지역을 ‘신흥지역’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신흥 지역은 과도기적 연회 자문팀 혹은 기타 지도 체계 및 충분한 교회와 목회자를 갖추어야 연회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신흥 지역은 대의원 인증 마감일까지 총회에 목회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각 1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 A. 총회 본회의에 방청객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나, 제한 구역 내 착석이 불가하며 발언권이나 표결권은 없습니다.
- B. 본인이 선택한 입법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표결권은 없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입법 위원회에 허용된 최대 대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C. 총회 예산에서 교통, 식사, 숙박 비용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VIII. 총회의 위원회들

A. 행정 관리 위원회

1. **의사일정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온 8명의 텔리게이트(목회자 절반, 평신도 절반)로 구성되며, 각 입법 위원회 의장들과 당연직 위원인 총회 총무도 포함됩니다. 감독회는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할 감독 한 명을 지명합니다. 해당 일자의 회기를 주재하는 감독들은 소통 목적을 위하여 회의에 배석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 입법 위원회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총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청원 심사를 포함하여 본회의의 일일 순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 본회의의 사회자를 선정합니다.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한 번에 하나의 우선순위 안건을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데, 한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청원 의제들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 본회의의 일 종료 시, 다음 본회의의 일의 잠정 의사일정을 발표합니다.
2. **A 자격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온 8명의 텔리게이트(목회자 절반, 평신도 절반)로 구성되며, 총회 총무와 협의하여 자격 증명 승인 및 텔리게이트 착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합니다.
3. **A 참조 청원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온 8명의 텔리게이트(목회자 절반, 평신도 절반)로 구성되며, 접수된 모든 청원 및 해상도를 해당 입법 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청원이나 해상도의 유효성에 대한 청원 비서의 판단을 확인합니다.

4. A 공보 위원회는 3명의 텔리게이트와 총회 총무로 구성되며, 매일 회의록을 승인하고, 총회 이후 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청원을 교리와 장정 내 다른 조항과 조정합니다. 위원회는 채택된 변경 사항에 근거하여 교리와 장정의 최종본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공천 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온 8명의 텔리게이트로 구성되며, 절반은 목회자이고 절반은 평신도이며, VIII.C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 위원회는 각종 일반 교회 위원단과 협의회의 회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의 후보자 리스트를 공천할 것입니다.~~

B. 행정 위원회 구성원

1. 행정 위원회 위원 자격은 ~~2024년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봉사했고(¶812.2g) 또한 2032년 총회의 대의원인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후보자는 인터넷을 통한 가상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메일 소통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는 8명의 정규 위원(섹션 V.A) 외에, 다음 위원회에는 2024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연회에서 파견된 목회자 1명과 평신도 회원 1명(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음)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자격, 참조, 공보(3명 외), 공천.~~
3. 각 대표단은 각 행정 위원회별로 목회자와 평신도 텔리게이트를 2031년 9월 1일까지 공천합니다. 총회 위원단은 자체 절차를 통하여 대표단이 제출한 후보자 풀(¶812.2g)에서 각 위원회별 후보자 리스트를 공천하되, 교회의 지리적 지역 전반에 걸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유의합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 멤버십은 2031년 11월 1일까지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도 입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C. 공천 위원회

1. 공천 위원회는 다른 행정 위원회(VIII.B)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며, VIII.B.1의 자격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일반 교회 협의회, 위원회 및 위원단의 구성원으로 섬길 다양한 후보자 명단을 추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Par. 605.1, 803.2, 920.5).
2. 공천 위원회 멤버십은 직원 외에 23명으로 구성됩니다
 - a. 각 연회 대표단은 이 위원회에서 봉사할 목회자 텔리게이트 한 명과 평신도 대표 한 명의 후보자를 제출합니다.
 - b. 그 후 후보자들은 감독 구역별로 분류됩니다. 각 감독직 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후보자들 가운데 목회자 텔리게이트 한 명과 평신도 대표 한 명을 선발합니다.
 - c. ACE 의장들은 위원회로 모여, 다양성과 균형을 위하여 제안된 후보자 리스트를 검토합니다.
 - d. 그 후 연대 협의회는 선정된 회원들을 승인할지 여부를 표결합니다. 이 16명의 회원은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습니다.
 - e. 또한 감독회는 위원회에서 봉사할 감독 두 명을 지명합니다. 총리사들은 그들 가운데 두 명을 지정하여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연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위원회에서 봉사할 평신도 지도자 두 명을 지정합니다. 이 마지막 여섯 명의 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 없이 봉사합니다. 연대 운영 책임자는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 없이 봉사합니다.
 - f. 직원 지원은 총회 총무가 제공합니다
 - g. 위원회는 자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총회 총무가 비서로 봉사합니다.
3. 대표단은 2031년 10월 15일까지 일반 교회 협의회, 위원회 및 위원단에 대한 후보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천 위원회는 2032년 1월 31일까지 추천 후보자 명단을 발행할 것입니다. 대표단은 2032년 2월 28일까지 선정되지 않은 이전 후보자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입법 위원회

청원을 처리하는 절차의 첫 단계에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위원회는 ~~eight~~ seven개가 될 것입니다. 제출된 청원의 수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연대 협의회는 위원단의 권고에 따라 두 개의 입법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하나를 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총회 위원회는 각 총회에 정해진 대의원 수에 따라 입법 위원회의 최소 및 최대 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대 협의회에서 임명한 청원 비서는 제출된 각 청원의 처리 결과와 근거(채택, 미채택, 회부)를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각 입법 위원회에 배정된 청원 외에도, 어느 입법 위원회든 향후 총회를 위한 제안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무 그룹 또는 태스크 포스 구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입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2026년 교리와 장정을 반영하도록 문단 번호를 조정합니다:

1. 교리, 성례전, 및 사회적 증언

교리 성명서; 사회적 증언 성명서 및 결의안; 100번대 전체 단락; 300번대 전체 단락; ¶¶412-421

(모든 사회적 증언 성명서는 본회의에서 75퍼센트 찬성 투표가 필요함을 전제로 함
¶¶208.13-14)

2. 개체 교회 | ¶¶401-411, 422-448, 450-456

3. 사역 | 500번대 전체 단락

4. 감리직 | 600번대 전체 단락

5. 헌법 및 회의

200번대 및 700번대 전체 단락; 연회 및 지역 총회 경계

6. 연대 조직 및 재정

¶¶449, 800번대 및 1000번대 전체 단락

7. 사법 행정

900번대 모든 단락 및 사법 관행 및 절차

E. 입법 위원회 멤버십

각 연회 대표단 내에서, 각 대의원은 어느 입법위원회에서 봉사할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2031년 12월 1일까지 늦어도 그 이전에 총회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입법 위원회 구성은 대의원의 선호, 최소 및 최대 위원 수, 그리고 성별, 인종, 민족, 지역 등 다양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총회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입법 위원회는 평신도 55% 또는 목회자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배정은 2032년 1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F. 입법 위원회를 위한 절차

1. 회의 전 회의 — 입법 위원회는 한 차례 2032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가상으로 회합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회의 진행 교육을 받습니다. 선출 직후, 임원들은 온라인 회의로 교육을 받고 입법 위원회 업무를 조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임원들**— 첫 회의는 현직 또는 명예 감독이 주재합니다. 이후 회의는 선출된 위원회 임원들이 주재합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간사와 필요시 분과위원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글로벌하고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지도부가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총회 위원단은 입법 위원회 임원이 선출되는 대로 해당 임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되, 2032년 4월 30일까지 늦어도 그 이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션/동의는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됩니다. 위원회 의장은 의장의 투표가 동의안을 채택되게 하는 경우, 즉 가부 동수를 깨거나 특별다수 요건에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임원은 모션/동의에 관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회의 진행 규율 위원** — 가능한 범위에서 각 입법 위원회에는 총회 텔레게이트가 아닌 자원봉사 회의 진행 규율 위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회의 진행 규율 위원들은 총회 개회 전에 열리는 온라인 회의 등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회가 우리의 공동 삶을 위한 언약과 회의 규칙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또한 이 담당자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위원회 절차에 대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4. **비서 보조자** – 각 입법 위원회에는 총회 텔레게이트가 아닌 비서 자원봉사 보조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조자는 청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의 모든 변경 사항과 모든 청원에 대한 최종 조치를, 총회 비서가 지정한 디지털 추적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선출된 위원회 비서의 기능은 회의록 작성과 회의 출석 기록으로 제한됩니다.
5. **첫 회의 소개** — 각 텔레게이트는 총회에 등록할 때와 동시에, 다만 2031년 12월 1일까지 늦어도 그 이전에 총회 총무실에 100단어 분량의 서면 약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서면 소개서에는 사진, 간략한 교회 활동 이력, 그리고 관심 분야, 경력 및 전문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개서에는 해당 인물이 입법 위원회 임원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음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비서의 사무실은 번역을 확보하고, 최초 회의 전에 모든 회원의 서면 소개서를 위원회에 송부합니다. ~~위원회 첫 회의 시작과 함께, 각 위원은 본인의 성명, 거주지, 평신도 또는 성직자 여부, 그리고 소속 연회나 지방회를 밝히며 자기소개를 진행합니다..~~
6. **정족수** — 입법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논의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1/2)의 출석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며, 이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명단 호명이 이루어집니다. 출석 및 결석 기록은 각 회의가 시작될 때 위원장 또는 그 지정인이 위원회 기록을 위해 발표합니다.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회의 날짜 설정**— 각 입법 위원회의 첫 가상 회의 일시 선정은 회원들의 참석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총회 ~~위원단~~ 비서가 확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총회 위원단 연회~~는 해당 여건이 부족한 대의원들을 위하여, 안정적인 인터넷과 필요한 기술(기기 포함)을 갖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회는 총회 위원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 시간 및 날짜에 대한 통지는 전자 매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의원이 입법 위원회 회의 (가상 회의는 제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표단장은 대체 대의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는 제공되는 교육/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선택한 입법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됩니다.
8. **의사일정**— 가상 회의 안내에는 서면 의사일정과 함께, 해당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원회 회의 안건이 게시되어 배포된 후에는, 의장이 비의제 안건으로 판단한 사안은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그 사안을 심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습니다. 대면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은 위원회 의장이 이전 회기의 종료 시에 발표해야 합니다.~~

9. **비공식 토론** — 이의가 없거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장은 청원안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허용하기 위해 로버트 회의 규칙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모든 위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정 개인의 발언이 토론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안전 처리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될 때, 의장은 청원안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로버트 회의 규칙 적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10. **사안을 표결에 부치기** — 의장이 동의, 청원 또는 개정이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찬반 발언 횟수가 정해진 수에 도달한 경우, 그는/그녀는 해당 청원, 동의 또는 개정에 대한 표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토론을 계속하기로 표결하지 않는 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모든 청원이나 동의안에 대한 토론 연장 동의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해당 토론 연장 동의가 적시에 제안된 경우, 이는 반드시 청원, 동의 또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계속하려면 과반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 청원 또는 수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토론 종결 요구).
11. **요구 사항 비율** — 3분의 2 투표(사회적 증언 성명서, ¶¶ 208.14) 또는 4분의 3 투표(교리 성명서, ¶212) 요건은 입법 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의 최종 조치에만 적용됩니다.
12. **투표 결과 공개 발표** — 비절차적 조치, 청원 또는 동의(또는 그에 대한 개정)에 대하여 위원회가 취한 투표 조치의 결과와 총 득표수는 투표 시점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통하여 본회의에 제시될 수 있도록 총회 총무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13. **위원회 회의 공개** — 입법 위원회의 화상 회의는 녹화되어야 하며, 해당 녹화본은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모든 대면 회의는 공간 제한을 조건으로 참관인에게 개방됩니다.
14. **위원회 회의 회의록** — 회의록 형태로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회의록과 해당되는 경우 소수 의견 보고서는, 조치가 이뤄진 당일 오후 6시까지 총회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 날 일간 저널에 게재됩니다. 위원회 회의록 외에도, 위원회는 회의 중 토론에서 제시된 모든 서면 자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서면 문서는 교단 웹사이트에서 계속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기간 동안 작성되거나 사용된 모든 문서, 청원서, 동의안의 전자 문서는 역사적 가치와 입법 과정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위해 교단 웹사이트에 보관됩니다.

b. 모든 버전은 역사적 및 입법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교단 웹사이트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됩니다.

IX. 공천 및 선거

총회는 공천 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 및 위원단에서 봉사할 회원을 다수결 투표로 개별적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원 자격은 총회 대의원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해당 연회 내에서 양호한 상태인 글로벌 감리교회의 목회자 또는 평신도 회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메일 소통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 **공천 절차(¶803.2).** 연회 ~~s and/or~~ 대표단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2031년 10월 15일까지 위원회에 공천을 제출하도록 격려받을 것입니다. 각 연회 대표단은 해당 연회 내에서 양호한 상태에 있는 GMC 목회자 또는 평신도 회원 중에서 최대 20명의 후보자를 제출하며, 그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한 두 개의 연대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2031년 11월 1일까지 최대 100단어의 간략한 약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표되는 모든 후보자 리스트에서 후보자 이름과 함께 인쇄될 것입니다.

- B. **대표성.** 공천 위원회는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리적, 인종/민족, 성별, 연령의 다양성뿐 아니라 회원의 은사와 경험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투표를 할 때 이러한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C. **공천 위원회 절차.** 공천 위원회는 GC 웹사이트에 각 위원단 또는 협의회별 추천 후보자 리스트를 2032년 1월 31일까지 늦어도 그 이전에 게시할 것입니다.
- D. **추가 후보.** 공천 위원회의 후보자 리스트가 게시되면, 대표단은 총회 총무에게 re-nominate 추가 인물을 203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천 위원회 후보자 전체 리스트와, 연회 대표단이 재제출한 리스트에 포함된 기타 모든 후보자는 총회 사전 준비 자료집에 게재될 것입니다. 공천 위원회에서 공천한 사람은 ~~별표로 표시되며~~ 구분되도록 강조 표시됩니다.
- E. **추가 회원.**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회나 위원회에 추가 회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F. **선출될 협의회 및 위원회.**
1. 연대 협의회(¶807.2)
 2. 전도, 선교, 교회 개척 위원회(¶808.1)
 3. 제자도, 교리, 정의 사역 위원회(¶809.1)
 4.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회(¶810.1)
 5.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회(¶811.1)
 6. 총회 위원회(¶812.1)
 7. 에큐메니칼 관계 위원회(¶813.1)
 8. 연회 위원회(¶814.2)
 9.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 연대 협의회가 공천 (¶605.1)
 10. 연대 항소 협의회(및 대체 위원)(¶920)

X. 대의원 비용

미국 대의원들의 여행, 숙박 및 일당 전액은 연회에서 (연대 기금, 특별 모금 또는 기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부담하도록 권장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온 대의원들의 경비는 총회 또는 다른 연회와의 동반자 협약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의 연회는 가능한 한 이러한 비용에 대해 자립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됩니다. 총회 경비로 항공료가 지원되는 대의원들의 경우, 총회위원회단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이 예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총회 개최지까지의 왕복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가장 경제적인 조건으로 직항 또는 이에 준하는 일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 외부의 연회에서 온 대의원에게는 총회 개최 예정일 전후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착 및 출발을 위한 추가 경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회의 전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식비와 숙박비를 자비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대의원이 동일한 차량으로 총회 개최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주차비, 통행료, 그리고 총회위원회가 공지한 기준 금액에 따른 주행 거리 비용을 포함한 실제 여행 경비를 상환받게 됩니다.

XI. 대표단 조직

- A. 각 대표단은 대표단 자체가 정한 방식 또는 소속 연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대표단장을 선정합니다.
- B. 다음 사항들은 대표단장의 책임이지만 이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체 대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총회를 앞두고 총회 기간 동안 각자의 책임에 대해 안내합니다.
2. 총회와 대의원들 사이의 주된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며,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이정표가 적시에 완료되도록, 모든 텔레기이트와 대체의 등록, 여행 준비, 및 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십시오.
4. 대의원들과 함께 총회 조직과 우리의 공동 삶을 위한 언약 계획을 검토합니다.
5. 총회에 상정될 입법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6. 요청된 바에 따라 입법 위원회에서 봉사하기 위한 대의원의 선호와 대표단의 행정 위원회 공천을 제출하십시오.
7. 대표단과 연회가 총회 협의회 및 위원회 후보를 제출하는 절차를 촉진합니다.
8. 필요한 경우 자격 증명 팀에서 개발한 절차를 통하여 입법 및 본회의에서 대체 대의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XII. 청원 경찰, 페이지 및 회의 전문의원

- A. 총회 위원회 또는 그 지명자는 총회 현장에서 봉사할 안내요원, 회의 보조요원, 의사진행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내요원과 회의 보조요원은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봉사합니다.
- B. 마샬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내에 허가받은 자만 출입하도록 하여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길 안내를 돕거나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C. 회의 보조요원은 자료 배포, 투표 안내원 역할(필요한 경우), 커뮤니케이션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 대의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D. 회의 전문 의원은 본회의와 입법위원회 세션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전문 의원은 총회 대의원이 아니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총회 예산에는 총회 참석 및 참여에 필요한 회의 전문 의원들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공동 삶을 위한 질서의 언약

I. 매일의 일정

의제 위원회는 매일 일정을 정하고, 모든 본회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본 회의는 통역 서비스와 협의 후, 전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저녁 회의 개최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II.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과 대체대의원은 대표단 의장이 해당 대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된 순서대로 착석합니다. 대체의원은 대체하게 되는 해당 대의원의 좌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체의원은 대의원이 발표할 때 대신 대의원석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좌석에 착석하도록 선택된 대체의원은 결석한 대의원과 동일한 신분(평신도 또는 목회자)이어야 합니다.

III. 의회 절차

- A. **목적.** 이 언약과 *로버트 회의 규칙*의 목적은 총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공정하고 질서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나 *로버트 회의 규칙*은 회의체의 결정능력을 방해하거나, 소수 의견을 침묵시키거나,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의견이 들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본 언약에 규정된 공동 의사결정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그 정신을 따라 활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 B. **합의.** 가능한 경우, 총회는 전체 교회의 일치성을 구현하는 합의 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 ¶705.1 총회는 *로버트 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또한 총회에서 채택된 보충 규칙도 적용됩니다.
- C. **정족수.** 총회를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그러나 정족수를 채우기 전에는 보다 적은 인원이 회의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족수 충족을 위해 날짜별로 휴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공식 기록(저널) 승인, 출석 점검 후 무기한 산회를 할 수 있습니다(¶705.2).
- D. **동의 안건.** 입법 위원회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은 청원은 매일 시작되는 동의 안건으로 승인, 반대 또는 회부할 수 있으며, 대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 안건에서 해당 안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권고 채택, 여러 단락에 영향을 미치는 청원, 및 한 단락에 광범위한 변경을 제안하는 청원은 통상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 **의사일정.** 의사일정 위원회는 매일 업무 시작 시 의사일정을 추천하며, 이는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본 회의 다수결 투표로 채택됩니다. 총회 서기는 오늘의 순서와 위원회 보고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유지하고 안내합니다. 의제로 상정된 안건은 채택된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심의되며, 다만 총회가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경우, 특정 안건을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심의할 수 있습니다..
- F. **발표자.** 입법위원회의 찬성표를 얻은 제안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본회의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로부터 소수 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서가 먼저 제시된 후, 위원회 안건에 대한 표결 이전에 그 소수 보고서가 제시됩니다(언약 III.14 참조).
- G. **발언.** 발언을 원하는 대의원은 먼저 사회자의 발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의 진행 발언이나 의사진행 질문이 아닌 한,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않는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발언권을 부여받은 대의원은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발언 언어, 이름, 목회자/평신도 여부, 연회 소속, 그리고 발언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사회자에게 허락 받은

대의원은 다른 이에게 발언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사회자는 발언자를 지명할 때 회의장의 여러 구역을 고르게 고려하고, 글로벌 교회의 폭넓은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대의원 투표로 토론이 연장되지 않는 한, 동의에 대한 토론은 찬성 3회, 반대 3회로 제한되며, 각 발언은 3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어떤 대의원도 질문이나 잘못된 진술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한 동일한 동의안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단, 청원 또는 소수 의견 보고서를 제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은 표결 전에 최대 3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4.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 제한은 언제든지 본회의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언 횟수 제한과 발언 시간의 길이는 언제든지 본회의의 3분의 2 찬성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발언 횟수 제한과 발언 시간은 언제든지 본회의 다수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 H. 토론 종료.** 이전 질문을 논하자는 동의는 토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안에 대해 늘하던대로 최소 두 번의 찬성 및 두 번의 반대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동의안이 채택되려면 참석하여 투표하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I.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제기하려는 대의원은 절차를 중단한 후 사회자의 허락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먼저 관련 규칙을 인용한 다음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요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의사 진행 규칙 문제는 자문이나 결정을 위해 회의체에 회부되지 않는 한 토론 없이 사회자가 결정합니다. 사회자의 관정에 대하여 본회의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에 부치기 전에 사회자와 항소인만 항소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고, 각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J. 동의안.** 동의 및 재청권은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으로 제한됩니다. 위원회로 부터 오는 동의는 재청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모든 동의안과 수정안은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K. 선거.** 유효한 선거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효 투표용지의 수가 전체 유효 투표 대비 요구되는 백분율 기준치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 성립합니다. 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원해야 할 공석 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후보자에게 중복 투표할 수 없으며, 이미 당선된 인물에게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 L. 투표.** 투표는 전자 투표용지, 서면 투표용지, 또는 거수로 할 수 있습니다.
1. 대의원은 회의장 내에 있어야 투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황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직후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든 어느 대의원이든 숫자를 세어서 표결하자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 투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표는 기립 투표로 이루어지며 안내원들이 개표위원 역할을 합니다. 전자 투표가 비선거 동의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비밀 투표 요청은 다수결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도우미는 비밀 투표의 투표 관리위원 역할을 합니다.
 3.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동의안은 가결됩니다:
 - a. 대의원이 아닌 사람은 의장의 초청이나 3분의 1의 찬성으로 입법 위원회에서 발언하도록 초대될 수 있습니다.

- b. 가부 동수로 표결이 나올 경우, 사회자의 판정이 유지됩니다.
- c.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i. ~~최초 채택 이후~~ 규칙을 채택,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최초 채택 이전에는 규칙을 다수결 투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언약, V).
 - ii. 헌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 iii. 오늘의 특별 안건을 보류하기 위해.
 - iv. 이전 질문 요청을 유지하거나 토론을 종결하기 위하여.
 - v. 채택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안건을 다루기 위해.
 - vi. 본 규약에 명시된 시간 외에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

M. 토론 불가능한 동의안. 다음 동의안은 토론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1. 최종 회의 종결 이외에, 자격 요건이 안되는 휴회를 위해
2. 규칙을 일시 중단하기 위해
3. 동의를 상정하거나 상정된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
4. 적법할 때 이전 질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토론 종결).
5.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동의를 재고하기 위해.
6. 토론 시간을 제한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7. 기도로 분별 시간을 위한 일시 중단을 위해.

N. 대체안 및 소수 보고서.

1. 결의안이나 청원은 대체안이 해당 주제와 관련이 있고, 본안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닌 대안일 경우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입법 위원회 소수 의견에서 제기된 대체안은 소수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 위원회 다수 의견과 동시에 제시됩니다.
2. 우선 본안 또는 입법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대체안이 제시됩니다. 본안은 우선 제안된 모든 수정안을 받아들여 다루어진 후에 진행됩니다. 그 후 대체안은 제안된 모든 수정안을 받아들여 다루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안을 본안 대신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대체안 동의가 과반수로 통과되면, 대체안이 본안이 됩니다. 대체안 동의가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하면, 원래의 본안이 계속 유효하며 최종적으로 처리가 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4. 대체 동의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찬반 양측에서 각 2명씩 발언하기 전에는 토론 종결 동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소수그룹/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해당 청원에 대한 위원회 최종 조치 후 한 시간 이내(휴식시간 제외)에 입법 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 보고 통지는 반대 표를 던진 위원 5인 또는 위원회 정원의 10% 중 적은 수의 서명을 요하며, 요청서에 해당 위원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6. 통지 절차(III.N.5)를 마친 후, 해당 대의원들은 소수 의견서의 실제 수정 문안과 함께 100단어 이내의 제안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수 보고서는 다음 날의 인쇄 마감 시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단 그 날이 총회의 마지막 날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 날이 총회 마지막 날인 경우, 소수 의견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되 늦어도 통지 당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일일 소식지와 별도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 O. 재검토.** 총회의 결정에 대해 재고 동의는 다수 측에 투표했던 대의원이 제안하는 경우 언제든지 적법하게 상정될 수 있습니다. 토론이 불가능했던 안전에 대한 재심의 동의는 토론 없이 처리됩니다.
- P. 휴회.** 휴회 동의는 정식으로 인정된 대의원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의원이 발언권을 가진 경우, 질문이 계류 중이거나 투표를 진행 중인 경우, 이전 질문이 소환되어 조치가 계류 중인 경우, 폐회 동의안이 부결되어 사업이나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회의 폐회 시간을 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계류 중인 경우, 폐회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Q. 미처리 안전.** 총회에 제출된 모든 유효한 청원은 입법 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승인, 거부 혹은 회부)되어야 합니다. 입법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청원은 본회의에서 처리(승인, 거부, 회부)되어야 합니다.

IV. 총회에서의 예의

- A.** 총회의 대의원과 게스트는 항상 친절, 열정, 애정어린 대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성경적 덕목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의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 대의원의 허락 없이는 총회장 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대의원은 단체 또는 위원회 진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총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B.**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공간에서는 가상 전자 회의를 포함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시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의의 사회자는 재량으로, ~~방청석~~ 관찰자를 포함하여 회의 예절을 위반하는 사람을 회의실 또는 가상 회의에서 즉시 퇴장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는 한, 현재 회기(세션)에만 적용됩니다. 사회자가 특정인을 퇴장시키기로 한 결정은 다수결 투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이러한 위반자의 퇴출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대의원 업무에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이 있으면, 사회자는 언제든지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총회의 세션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세션은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되어야 합니다.
- D.** 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된 자료의 배포는, 그 배포가 대의원들의 개인적 공간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 또는 입법위원회의 회의장 경계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사용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않은 물품들을 폐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 E.** 대의원석 내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비입법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의제 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의원석 내에서의 입법 자료 배포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V. 계획 및 언약 수정

- A.** 회의 시작 시 *조직 계획 및 함께하는 삶을 위한 언약*의 채택은 3분의 2 투표로 하되, 그 시점의 개정은 승인에 다수결 투표만 필요합니다. 최초 채택 이후, *계획과 언약*은 총회의 3분의 2 투표로 개정, 변경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B.** 이 *계획과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의회 절차 상황에서, 총회는 최신판 *로버트 회의 질서 규칙*에 따라 그 조치를 수행합니다.

2032년 총회 일정표

- 2029년 12월 31일 - 연회가 교회 수와 정규직 환산(FTE) 목회자 수를 확정
- 2030년 1월 31일 - 연회가 정규직 환산(FTE) 목회자 수를 보고하고 교단 데이터베이스의 교회 수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는 마감일
- 2030년 3월 31일 - 연대 협의회가 연회에 대한 텔레게이트 배당, 배분, 배급을 승인해야 하는 마감일
- 2030년 1월 1일 - 2031년 7월 1일 - 연회가 총회 텔레게이트를 선출
- 2031년 7월 1일 - 모든 텔레게이트 및 대체가 선출되고 인증됨
- 2031년 7월 1일 - 2031년 10월 31일 - 청원 제출 가능
- 2031년 9월 1일 - 연회 대표단이 행정 위원회에 대한 공천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
- 2031년 10월 15일 - 연회 대표단이 일반 교회 위원단 또는 협의회에 대한 공천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
- 2031년 11월 1일 - 연대 협의회가 행정 위원회를 선출해야 하는 마감일
위원단/협의회 후보자가 100단어 약력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
- 2031년 12월 1일 - 모든 인증된 텔레게이트는 여행 양식을 포함하여 이 날짜까지 회의에 등록해야 합니다
텔레게이트가 100단어 약력과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
텔레게이트가 입법 위원회 선호도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
- 2032년 1월 31일 - 텔레게이트를 입법 위원회에 배정하는 마감일
공천 위원회가 일반 교회 위원단 또는 협의회 추천 회원에 대한 후보자 리스트를 발행해야 하는 마감일
- 1월 31일 - 3월 31일, 2032년 - 입법 위원회가 가상으로 모여 임원을 선출하고 교육/오리엔테이션을 받음
- 2032년 2월 28일 - 연회 대표단이 공천 위원회 후보자 리스트에 없는 일반 교회 위원단 또는 협의회 후보자를 재공천하는 마감일
- 2032년 3월 1일 - 모든 텔레게이트 및 대체가 여행 준비를 완료하고 티켓을 구매함
- 2032년 4월 1일 - 최종 청원 신고서가 발행됨
- 2032년 4월 1일-30일 - 입법 위원회 임원들이 교육을 받음
- 2032년 5월 1일 - 비자 기한이 더 늦은 신청을 위임 사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텔레게이트가 필요에 따라 비자를 신청함
- 2032년 9월 1일 - 총회가 소집됨